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정안	비고(개정이유)
<p>경영계획 및 심사분석 규정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에스에이치(SH)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경영계획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성과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 <p>제 2 조 (정의)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“심사분석”이라 함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와 성과를 대조, 평가함으로써 경영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, 분석, 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. (조문이동 2조 4호 → 2조 4호 가목)</p> <p>가. “2조 4호 조문 이동”</p> <p>나. <신설></p> <p>다. <신설></p> <p>5. 현행과 같음</p>	<p>경영계획 및 사업관리 규정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에스에이치(SH)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경영계획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성과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 <p>제 2 조 (정의)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“사업관리”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분석, 단위사업관리(Project Management), 리스크 관리(Risk Management) 등을 통해 경영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</p> <p>가. 2조 4호 조문 이동</p> <p>나. “단위사업관리”라 함은 단위사업(Project)별로 개발계획 수립부터 공급까지 추진일정을 통합 관리하고,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사 일정, 사업 수지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다. “리스크 관리”라 함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사업리스크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또는 대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.</p> <p>5. 현행과 같음</p>	<p>○ 심사분석을 보다 넓은 의미인 사업관리로 규정함 (사업관리 ⊃ 심사분석, 단위사업관리, 리스크관리)</p> <p>○ 본 규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규정함. (심사분석 → 관리)</p> <p>○ 사업관리 안에 포함된 심사분석, 단위사업관리, 리스크관리에 대해 심사분석 정의는 기존 내용에 변경이 없이 사업관리 하위 조문으로 이동하고,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</p>

현행	개정안	비고(개정이유)
<p>제 3 조 (기능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<신설></p> <p>1. <신설></p> <p>2. <신설></p> <p>④ <신설></p>	<p>제 3 조 (기능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단위사업관리가 가지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공정 관리 기능 : 공중을 망라한 통합적 추진일정 관리를 통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기능</p> <p>2. 수지 관리 기능 :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검토·보고하는 기능.</p> <p>④ 리스크 관리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이나 이미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 및 자문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.</p>	<p>○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의 기능 정의</p>
<p>제 4 조 (기준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<신설></p> <p>1. <신설></p> <p>2. <신설></p> <p>④ <신설></p>	<p>제 4 조 (기준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단위사업관리는 사업기간의 적정성, 분야별 진행상황,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정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.</p> <p>1. 투자심사,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시행이 확정된 사업</p> <p>2.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</p> <p>④ 리스크 관리는 경영계획 이행 및 사업관리를 저해하는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, 관리 대상 및 범위는 본조 제③항 1,2호와 같다.</p>	<p>○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의 기준 정의</p>

현행	개정안	비고(개정이유)
<p>제 5 조 (계획수립) ①기획경영본부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본부·실, 홍보처 및 도시연구소(이하 “각 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 조 (계획수립) ①기획경영본부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본부·실, 전략홍보처 및 SH도시연구소(이하 “각 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○ 현행 직제에 맞게 명칭 변경</p>
<p>제8조의2 (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)</p> <p>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</p>	<p>제9조 (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)</p> <p>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</p>	<p>○ 조번호 변경</p>
<p>제 4 장 단위사업관리 <신설> 제 18 조(관리내용) <신설> 제 19 조(사업관리의 구분) <신설></p>	<p>제 4 장 단위사업관리 제 18 조 (관리내용) ①단위사업관리는 기획경영본부 재정전략팀에서 주관이 되어 총괄하며, 관련 부서는 자료 제출, 설명 요구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총괄부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되, 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사업관리(일정 관리, 재무관리)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1. 추진일정 : 심사분석과 연동하여 개발계획부터 공급까지 통합 추진 일정 작성 및 일정 준수 여부 관리</p> <p>2. 사업수지 : 투자심사, 이사회 의결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수지 변경사항 발생 또는 예상시 관련 내용 관리</p> <p>제 19 조 (사업관리의 구분) 단위사업별 성격, 규모, 투입비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되, 필요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따로 정한다.</p> <p>1. 관리대상 사업지구 : 투자심사,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시행이 확정된 사업</p> <p>2. 중점 관리대상 사업지구 :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, 사업결과가 공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 사장이 인정한 사업</p>	<p>○ 단위사업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(개정이유)
<p>제 4 장 단위사업관리 <신설> 제 20 조(결과보고) <신설></p>	<p>제 20조 (결과보고) ① 단위사업관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식별된 리스크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리스크관리실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관리대상 사업의 준공 후 추진일정, 사업수지 변동 현황, 발생 리스크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사업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, 각 부서와 공유한다.</p>	<p>○ 단위사업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</p>
<p>제5장 리스크 관리 <신설> 제21조(용어) <신설> 제22조(리스크관리) <신설></p>	<p>5 장 리스크 관리</p> <p>제21조 (용어) 본 내규의 용어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리스크는 사업의 기획, 진행 또는 유지관리에 있어 각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잠재적 상황이나 이미 발생한 문제점을 말한다.</p> <p>2. 위원회 운영팀은 위원회를 소집, 개최하는 부서로서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처 재정전략팀을 말한다.</p> <p>3. 주관사업분부는 관리대상사업의 기획, 진행을 주관하는 본부 및 실을 말한다.</p> <p>제22조 (리스크관리) ① 추가, 변동 또는 해소된 사업리스크의 식별은 주관사업본부 또는 산하 사업별 담당팀(이하 “사업담당팀”)에 의해 수시로 수행된다.</p> <p>② 식별결과는 리스크 관리현황 최신화를 통해 주관사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주관사업본부장은 식별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해소 대책을 수립한다.</p>	<p>○ 리스크 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(개정이유)
<p>제5장 리스크 관리 <신설> 제22조(리스크관리) <신설> 제23조(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) <신설> 제24조(리스크관리위원회) <신설></p>	<p>③ 주관사업본부 또는 산하 사업담당팀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자문사항을 참고하여 리스크해소 대책을 수립한다.</p> <p>④ 주관사업본부 또는 산하 사업담당팀은 본조 제②항 또는 제③항에 따른 리스크해소 대책 수립 후 위원회 운영팀으로 즉시 송부한다.</p> <p>제23조 (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) 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리스크 관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앞서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한다.</p> <p>③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은 관련부서의 처장 또는 팀장급 직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기획경영본부장이,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이 되고, 간사는 재정전략팀장으로 한다.</p> <p>제24조 (리스크관리위원회)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영한다.</p> <p>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리스크 식별, 식별된 리스크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한다.</p>	<p>○ 리스크 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(개정이유)
<p>제5장 리스크 관리 <신설> 제24조(리스크관리위원회) <신설> 제25조(비밀유지) <신설> 제26조(외부 참여위원의 수당)<신설></p> <p>부칙 <신설></p> <p>서식1 <신설></p>	<p>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 5인 이내, 서울시 관련부서장 2인 이내, 내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④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나머지 내부위원은 실·처장으로 하고, 간사는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</p> <p>⑤ 서울시 관련부서장은 서울시 소속의 관리대상사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</p> <p>⑥ 위원회 운영팀장은 위원회 개최 시 아래 각 호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각 실·처장급 책임자의 관리대상사업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참석이 요구되는 내부위원 구성 2.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외부전문가 구성 <p>제25조 (비밀유지) 참여위원 중 외부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안서약서(서식1)에 본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 운영팀으로 제출한다.</p> <p>제26조 (외부 참여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부칙(2015. . 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 <p>사업리스크 관리 보안 서약서 (서약서 내용 하단 참조)</p>	<p>○ 리스크 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</p> <p>○ 외부위원들의 보안서약서 서식</p>

